

경운대학교 조기졸업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이 규정에서 “조기졸업”이라 함은 학사과정에서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여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(과)로 한다.

제4조(이수범위)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.2 이상으로 7학기 이상 수강하여 제1전공 학과의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에 합격하여 졸업사정 기준에 도달한 자에 한한다.

제5조(자격상실)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학칙 제48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
2. 조기 졸업을 포기한 학생
3. 조기 졸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

제6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